

## 과태료의 부과기준 (제69조 관련)

### 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- 2)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 - 3)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
  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### 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| 위반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 법조문        | 과태료 금액 |       |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1차 위반  | 2차 위반 | 3차 이상 위반 |
| 가. 법 제7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| 법 제87조제4항 제1호 | 30     | 50    | 100      |
| 나.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87조제1항 제1호 | 500    | 700   | 1,000    |
| 다.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제품등을 제조·수입·공급 또는 판매한 경우 | 법 제87조 제2항제1호 | 300    | 400   | 500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|
| 라.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를 하지 않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87조제3항 제2호   | 200 | 250 | 300   |
| 마.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87조제1항 제2호   | 500 | 700 | 1,000 |
| 바. 법 제14조의3제2항 또는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따른 조치의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87조제2항 제2호   | 300 | 400 | 500   |
| 사. 법 제14조의5에 따른 현장조사를 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(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)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87조제2항 제3호   | 300 | 400 | 500   |
| 아.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87조제3항 제3호   | 300 | 300 | 300   |
| 자.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 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87조제4항 제2호   | 50  | 70  | 100   |
| 차.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87조제2항 제4호   | 300 | 400 | 500   |
| 카.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물 사용기기에 물 사용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87조제3항 제3호의2 | 300 | 300 | 300   |
| 타. 법 제21조제6항(법 제50조,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 설치자가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87조제3항 제3호의3 | 300 | 300 | 300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
| 파. 법 제23조제2항(법 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수도사업자가 위탁계약 체결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87조제3항 제4호   | 100 | 200 | 300 |
| 하. 법 제28조제4항·제5항·제6항 또는 제7항(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일반수도사업자(수탁자를 포함한다)가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87조제3항 제4호의2 | 300 | 300 | 300 |
| 거. 법 제28조의2제1항(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자(수탁자를 포함한다)가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87조제3항 제4호의3 | 300 | 300 | 300 |
| 너. 법 제29조제3항(법 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자(수탁자를 포함한다)가 수질 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작성·보존하지 않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가 수질 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작성·보존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87조제4항 제4호   |     |     |     |
| 1) 일반수도사업자(수탁자를 포함한다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80  | 90  | 100 |
| 2) 전용상수도 설치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50  | 70  | 100 |
| 더.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87조제3항 제5호   | 200 | 250 | 300 |
| 러. 법 제32조제3항(법 제23조제3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87조제4항       |     |     |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
|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<br>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일반수도<br>사업자(수탁자를 포함한다) 또는<br>전용상수도 설치자가 건강진단에<br>관한 기록을 작성·보존하지 않은<br>경우 | 제5호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
| 1) 일반수도사업자(수탁자를 포함<br>한다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80  | 90  | 100 |
| 2) 전용상수도 설치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50  | 70  | 100 |
| 며.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<br>를 하지 않고 사업을 폐업하거나<br>휴업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87조제4항<br>제6호 | 10  | 50  | 100 |
| 며. 법 제36조(법 제23조제3항에 따<br>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<br>위반하여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<br>교육을 받지 않거나 받지 않게 한<br>경우                 | 법 제87조제4항<br>제7호 |     |     |     |
| 1)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<br>관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30  | 40  | 50  |
| 2) 저수조청소업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50  | 70  | 100 |
| 3) 일반수도사업자(수탁자를 포함<br>한다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50  | 70  | 100 |
| 서. 법 제39조제2항(법 제50조에 따<br>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<br>위반하여 수도사업자가 미리 수돗<br>물을 공급할 수 없는 구역 및 기간<br>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     | 법 제87조제4항<br>제8호 | 50  | 70  | 100 |
| 어. 법 제45조(법 제50조에 따라 준<br>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<br>여 수도사업자가 수도에 소화전을<br>설치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87조제3항<br>제6호 | 200 | 250 | 300 |
| 저.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수도사업<br>의 시행 또는 급수설비의 검사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87조제3항<br>제7호 | 300 | 300 | 300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
| 필요한 토지 출입 등의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
| 처.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87조제4항 제9호 |     |     |     |
| 1)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100 | 100 | 100 |
| 2)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50  | 70  | 100 |